

III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

1. 일반전형(정원 내)

가. 지원 자격: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당 모집단위별 반영 영역 수능 응시자("계열별 반영 방법 9쪽 참조)

나. 제출 서류: 없음

2. 특별전형(정원 외)

가. 농어촌학생전형

1) 지원 자격

지원 자격		비고
(공통)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(광역시·도, 도·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·면, 태백시 포함) 또는 도서·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·벽지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이수한 자로서 <유형 I> 또는 <유형II>에 해당하는 자 (공통)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당 영역의 응시자		
유형 I	▶ 학생이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	
유형II	▶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	

※ 읍·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, 외국어고, 예술고, 국제고, 마이스터고, 체육고, 자율형 사립고는 제외

※ 부모의 사망,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대학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 요건 등을 심사

지원자 유의사항

- ▶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이후 읍·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지원 자격 부여
- ▶ 2개 이상의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·면 소재(도서·벽지 포함) 초·중·고등학교이어야 함.
- ▶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 중에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·면 (도서·벽지 포함) 지역이어야 하며, 이후는 다음의 기준에 따름.

사 유	부모에 해당하는 자
부모의 사망, 실종	○ 법률상 사망일(실종일)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
부모의 이혼, 재혼	○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○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(자녀교육권)을 가진 자
입양자	○ 입양일 이후부터 친권이 있는 양부모 ○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육권(자녀교육권)을 가진 자
혼인 외의 자	○ 부의 인지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모 ○ 부의 인지청구가 있는 경우 친권을 가진 자

2) 제출 서류

지원 유형	제출서류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(학교장 직인 날인 후 등기우편 제출) - 2012년 2월 졸업자 ~ 2017년 2월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생부 온라인 전산 자료 제공 거부자 - 전산 자료 미제공 고등학교 출신자 - 2011년 2월 이전 졸업자(지원 자격 확인용)
유형 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(발급 받은 학교의 학교장 직인 날인 후 등기우편 제출) ▶ 가족관계증명서 1부(학생 본인 명의) ▶ 학생, 부, 모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(주소 변동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.) ▶ 농어촌학생 지원 자격 및 거주사실 확인서 1부(본교서식2, 필수) <p>▶ 추가 제출 서류(해당자에 한함.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모 사망, 실종: 사망일이 표기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1부 - 이혼, 재혼: 기본증명서 1부(학생 본인 명의), 혼인관계증명서 1부(친권자 또는 양육권자) - 입양(또는 친양자 입양): 입양관계증명서(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증명서) 1부 <p>※ 위의 서류로 부모의 사망이나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제적 등본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</p>
유형 I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초등학교,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(발급 받은 학교의 학교장 직인 날인 후 등기우편 제출) ▶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 변동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.) ▶ 농어촌학생 지원 자격 및 거주사실 확인서 1부(본교서식, 필수)

※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2017.2.21(화) 18:00까지 팩스(033-259-5519) 제출하고 원본은 2017. 2. 23.(목) 18:00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. (팩스로 서류를 우선 제출 후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. 반드시 서류가 위 제출기일까지 입학과에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사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격 처리됨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 자격 관련 제출 서류는 [2017. 1. 28.(토)]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.
- 기본증명서(제적등본)를 통하여 친권(양육권)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, 친권(양육권)의 증명은 학생 스스로 해야 함.
- 주민등록이 말소(직권, 신고)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읍·면이나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.

나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

1) 지원 자격

	지원 자격	비고
	(공통)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(공통)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당 영역의 응시자	
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 및 제11호(차상위계층)에 의한 대상자 ▶ 차상위 의료급여, 자활급여, 장애(아동)수당,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,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,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	

2) 제출 서류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각 1부

구분		제출서류			
해당 서류	기초생활수급권자	▶ 수급자 증명서 1부 ※ 수험생 명의로 발급받아야 인정	읍·면·동 주민센터	※ 수험생 명의로 발급받지 않은 서류는 복지급여 대상 가구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「가족관계증명서」를 함께 제출	
	차상위 계층 (복지급여 수급자)	의료급여	▶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		국민건강보험공단
		자활급여	▶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		읍·면·동 주민센터
		장애수당	▶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		읍·면·동 주민센터
		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	▶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1부		읍·면·동 주민센터
		한부모가정	▶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		읍·면·동 주민센터
우선돌봄 차상위	▶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	읍·면·동 주민센터			

※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2017.2.21.(화) 18:00까지 팩스(033-259-5519) 제출하고 원본은 2017. 2. 23.(목) 18:00까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함. (팩스로 서류를 우선 제출 후 원본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. 반드시 서류가 위 제출기일까지 입학과에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사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격 처리됨)
- 자격관련 제출 서류는 [2017. 1. 28.(토) 이후]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

다. 재직자전형

1) 지원 자격

지원 자격		비고
재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의 재직자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 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한 자 -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) -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	

▶ **산업체 범위**

-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- 근로기준법 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 이상 사업체
-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(창업·자영업자 포함)
 - ※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(농업, 수산업등)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 (농지원부 등) 확인을 통해 인정
 - (예시) 농지원부, 농업경영체증명서,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, 전업농육성대상자 확인서 등
 - ※ 4대 보험 미 가입 영세창업·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로 인정
 - ※ 군복무 경력은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
- ▶ **재직기간 산정기준일:** 2017. 3. 1.기준
- ▶ **학생자격 유지기준:** 학생은 대학 입학 후 졸업 시까지 재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▶ **산업체 재직경력 합산:** 산업체 범위에서 정한 산업체 경력을 대상으로 민법 제160조(역에 의한 계산)에 따라 년월일까지 계산 (예시) 12월은 1년으로,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

2) 제출서류

구분		제출서류	비고
공통 서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▶ 학업계획서 1부(자유 서식) 	
해당자	▶ 산업체 재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직증명서 1부 ▶ 병적증명서 (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일 경우 제출) ▶ 경력증명서 1부(현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 제출) ▶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제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연금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1부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) 1부 -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고용지원센터) 1부 - 4대 보험 가입 확인서(http://www.4insure.or.kr) 1부 ▶ 직업군인: 현역복무확인서(임관일자 명시) 1부 	
	▶ 영세 창업 및 자영업자로서 4대 보험 미가입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자등록증명원(세무서) 1부 ▶ 납세사실증명서(세무서) 1부 ▶ 휴업/폐업사실증명원(세무서) 1부(해당자에 한함) 	
	▶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(농업, 수산업 등)	▶ 농지원부, 영농사실확인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적증명서 1부(읍, 면, 동장 발행)	

※ **제출 서류는 2017. 2. 23.(목) 면접고사 시 원본 제출**

3) 면접 고사

- 가) 면접 일자: **2017.2.23.(목)** ※ 입실마감 08:20
- 나) 면접 형식: 수험생 1인 대 면접위원 3인 개별 구술 면접
- 다) 면접 시간: 수험생 1인당 10분 이내
- 라) 면접 장소: 농업생명과학대학 1호관(건물번호 307) 213호